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토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지방자치법」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의 종합 발전방향인 초광역권계획이 「국토기본법」(법률 제18829호, 2022.2.3. 공포, 8.4. 시행)에 도입됨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, 작성방법과 관계기관 간 협의체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기본법」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)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초광역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
2. 그밖에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이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.

1. 국토종합계획,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과의 관계
2. 초광역권의 범위 등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
3. 초광역권계획 수립 원칙 및 주요 내용
4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사업

5. 그밖에 초광역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 계획 수립주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초광역권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 준 및 작성방법) ① 법 제12조 의2제1항제9호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초광역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인재 육성전략</u> <u>2. 그밖에 초광역권 발전에 필 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침으 로 정하는 사항</u> <u>②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 획이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 발 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, 법 제12조에 따라 승 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도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 성할 수 있다.</u> <u>1. 국토종합계획,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과의 관계</u> <u>2. 초광역권의 범위 등 초광역 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</u>

<신 설>

차

3. 초광역권계획 수립 원칙 및
주요 내용

4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
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
업으로 추진할 사업

5. 그밖에 초광역권계획 수립과
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
따라 작성한 초광역권계획 수립
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에
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에
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
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2조의2
제4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
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
초광역권계획에 관하여 학식과
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
다.

② 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
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
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2조의2
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
가 협의하여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731